

9

캐 나 다

1. 통관 및 검역제도

□ 정식절차

- 운송업체: 세관창고에 물품을 하역하면 5일까지 보관 가능
- 수입업체: T-124 양식으로 수입업체 번호(Importer No.)를 세관에 신청하면 즉시 부여 받음
- 통관사: 통관 시 필요한 모든 서류 세관에 제출
 - 화물통제서류(Cargo Control Document) 2부
 - 상업용 송장(Commercial Invoice) 2부
 - B3 Form (관세책정용) 2부, \$1,600 이상의 선적품은 통계청용 1부 추가
 - 기타 수입허가서, 식물검역증명서,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CITES 서류 등 수입품목별 관련기관 요구서류
- 세관: 제출서류 정밀검사, 관세평가후 관세납부 고지서 발부(K84)
 -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가가 의심되는 품목에 대한 조사는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서 관장
- 수입업자: 관세납부후 물품인수
- 소요시간: 물품도착 후 5일 이내 물품인도가 가능하나 농수산물 및 위해물 등은 검역을 위해 2~ 3일 추가 소요되며 수입품 종류 및 수입업체의 과거 기록에 따라 샘플링 빈도 차이
- 검역에 통과하지 않을 경우 반송되거나 폐기처분 또는 재검역을 신청가능

□ 특별절차

- 통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각종 특별절차 시행

- 최소서류통관(RMD: 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 세관과 신뢰관계가 구축된 수입업체나 통관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관세 부과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통관하여 물품인도 후 5일 이내 확정서류 제출
- 도착전 검토시스템(PARS: Pre Arrival Review System)
 - 물품도착전 서류검토 후 통관이 가능한 시스템이며 수입 자동차 품목에 경우 제품 선적시 모든 서류 검토가 이루어 지므로 제품 적하시 다른 제재가 없으므로 제품 통과 시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됨.

□ 식품검역국의 자동수입시스템(CFIA-AIS)

- CFIA에서 관장하는 모든 식품류의 수입요구 조건을 관리하며 세관과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특정 조건이 요구되는 식품류 및요주의 품목의 신속 통관
- 자동수입조건조회시스템(AIRS: Automated Import Requirement System)
 - CFIA가 검역하는 모든 식품류의 수입요구 조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조회 시스템으로 최근 CFIA의 웹사이트에 공개
 - 웹사이트 주소: <http://www.inspection.gc.ca/english/imp/airse.shtml>

□ 관세

- 수입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Customs Tariff에 근거한 관세와, Excise Tax, Special Import Measures Act 등에 근거한 각종 소비세와 부가세 등이 있음
- 관세율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HS코드 번호에 근거하여 책정하며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보다 높음
 - 최혜국관세(MFN Tariff):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적용
 - 일반특혜관세(GPT): 인도, 멕시코,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 특별관세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카리브해연안국, 기타 영연방국 등
- 한국은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로 지정되어 있지만 GPT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Memorandum D 11-4-4상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최혜국관세가 적용됨

□ 상품과 용역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

- 면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업용 수입품에 상품의 캐나다 달러 가치에 근거하여 5%의 GST를 적용하고 있음

□ 주요 품목의 WTO 양허관세율

H.S. Code	품 명	기준율(1995)	한계율(2000)
0201 - 0202	신선/냉동 소고기 - 퀴타내 - 퀴타초과	- 4.41 ¢ /Kg - 37.90%	- 0 - 26.50%
0203	신선/냉동 돼지고기		0
0404.90	밀크함유제품 - 퀴타내 - 퀴타초과	- 15% - 317.70%로 370.9 ¢ /Kg 미만	- 6.50% -270.10%로315.2 ¢ /Kg 미만
0602.99.10	선인장		
0710.80.50	신선버섯류	20%	12.80%
0712.30.10	건조버섯류	10%	6.40%
0802.40.00	밤		
0805.20.00	감귤		
0808.10	사과		
0808.20.21	배 (4/1-3/31의 12개월간 24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성이 명한 기간동안의 수입배)	3.31 ¢ /Kg로12.5% 미만	2.81 ¢ /Kg로 10.63% 미만
0808.20.29	배		
1211.20.00	인삼뿌리		

□ 원산지 규정

- 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 의 원산지 표기는 Industry Canada의 라벨링 요구조건과 구별되는 것으로 특정국산(Beneficiary country & Least

developed countries) 수입 가능여부나 관세책정 등 무역협정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한 것이며 10개 범주에 대해 원산지 표기 요구

- 가정용 개인용 상품, 공구류, 신제품 및 스포츠용품, 종이제품, 의류 (Including Fabrics), 원예작물, 육류, 수산물, 생물체, 원자재

□ 잔류농약 허용기준

- Food and Drug Regulation, Division 15에는 물질 및 농화학물질별 허용한도가 도표화 되어 있음

물 질 명	허용한도 (p.p.m.)	해당식품
비소 (Arsenic)	(1) 3.5 (2) 1 (3) 0.1	(1) 생선 단백질 (2) 식용 골분 (3) 과일쥬스, 과일넥타, 바로먹을 수 있는 음료류, 광천수나 용수를 제외한 밀봉용기포장 물
플루오르화물 (Fluoride)	(1) 650 (2) 150	(1) 식용골분 (2) 생선 단백질
납 (Lead)	(1) 10 (2) 1.5 (3) 0.5 (4) 0.2 (5) 0.15 (6) 0.08	(1) 식용골분 (2) 토마토 페이스트와 토마토 소스 (3) 생선 단백질 및 토마토전체 (4) 과일쥬스, 과일넥타, 바로먹을 수 있는 음료류, 광천수나 용수를 제외한 밀봉용기 포장 물 (5) 농축우유, 연유, 유아용 농축 조유 (6) 바로 먹을 수 있는 유아용 조유
주 석 (Tin)	(1) 250	(1) 통조림 식품

- 모든 신선과일 및 채소에서 copper compounds 허용한도는 50.0p.p.m., 신선 채소류에서 DDT 한도는 0.5 p.p.m.

<인 삼>

농 약 명	최대 허용치 (p.p.m.)
metalaxyl	3.0

<배>

농약명	최대허용치 (p.p.m.)	농약명	최대허용치 (p.p.m.)
abamectin	0.02	amitraz	1.0

<사 과>

농약명	최대허용치 (p.p.m.)	농약명	최대허용치 (p.p.m.)
abamectin	0.02	amitraz	0.5

<감귤류>

농약명	최대허용치 (p.p.m.)	농약명	최대허용치 (p.p.m.)
chlorpyrifos	1	2,4-D	2
diazinon	0.7	dicofol	5.0
dimethoate	1.5	diuron	1
ethephon	1.0	ethion	2.0
fenbutatin oxide	2.0	folpet	15
formetanate hydrochloride	4.0	imazalil	5.0
metalaxyl	5.0	methidathion	2.0
methomyl	1.0	mevinphos	0.2
naled	3	parathion	1.0
phosalone	1.5	propargite	5.0
sodium orthophenyl phenate	10	tetradifon	2
thiabendazole	10	abamectin	0.02
azinphosmethyl	2.0	cypermethrin	1.0

□ 리콜 사례

- 캐나다는 자국민 건강에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 리콜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한국산 식품 중 리콜 된 사례는 없으나, 과거 한국산 식품에 대해 알러지 유발가능 품목의 성분 표기 미비 이유로 리콜 된 사례가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홈페이지에서 Food Recalls and Allergy Alerts 섹션에서 확인 가능함.
- 메주가루: 제품 내 함유물질 중 알러지 유발가능 성분인 밀의 성분 표기를 하지 않음
- 단무지: 제품 내 함유물질 중 민감한 반응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황산염의 성분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Processed Regulations에 지정된 피클류의 표준용기 크기에 위배, Food and Drug Regulations하에 글루탐산나트륨 (MSG: 화학조미료)과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 (Aspartame)의 피클류 첨가 불가 위배

- 커피믹스: 커피믹스 제품은 우유성분이 들어가 있으나 라벨에 표기되어 있지 않음을 CFIA 에서 지적하여 적의 조치를 받았음. 이에 해당 업체는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커피믹스 제품을 소비하지 말 것을 경고 하였으며 자발적인 리콜 조치를 시행함.

3. 품목별 통관 및 검역 제도

1) 가공식품

☐ 주류

- 캐나다의 주류 판매는 각 주 (Province)의 주류 판매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의 경우 BC Liquor Distribution Branch (LDB)에서 모든 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수입되는 주류의 경우 반드시 현지의 Agent나 Supplier를 통해 수입되어야 하며 Agent나 Supplier들은 반드시 BC Liquor Control and Licensing Branch (LCLB)로부터 주류 수입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주류 수입자격을 취득한 업체들이 해외로부터 수입한 주류는 LDB에서 구매를 하여 BC 주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Liquor Store나 자격을 갖춘 Retail Store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 육류 및 육가공품

- 육류 및 가금육의 수입관련 규정은 "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s"와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에 기재

- 캐나다로의 육류 수출은 수출국의 육류검역 시스템이 캐나다의 기준과 동일함이 입증된 후 수출을 의도하는 육류 가공공장이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는 CFIA에서 관할
 - 현재 한국의 육류검역 시스템은 캐나다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실정이며 한국산 육류/가금육 및 2% 이상 함유 제품의 수입금지 상태임
- 육류 선적품은 수출국 공인 육류검역기관의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도착 직후 CFIA의 검역을 받아야 함
-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육류 수입품도 동물 질병 전파방지를 위하여 "Health of Animals Act and Regulations"의 규정 준수 요구
 - Memoranda D19-1-1 및 D19-1-2에 육류, 육류가공품, 육류부산물 등의 정밀검사 대상 리스트 기재
- 모든 육가공품 및 소비자용 포장의 생육은 수입전 라벨 및 조리법 등록을 마쳐야 하며, 업무는 CFIA의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Policy Coordination Division에서 맡고 있음
- 북미무역협정국(미국, 멕시코) 이외의 국가에서 수출되는 신선/가공가금육 및 냉장/냉동 소고기는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의 수입허가 필요

2) 신선과실 및 채소류

□ 관련법 및 구비서류

- 신선 과일 및 채소, 견과류, 식용 곰팡이(버섯류) 등은 품질, 라벨링, 포장, 등급판정, 식품안전 등의 측면에서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의 적용됨.
- 구비서류
 - 신선 농산물의 선적시는 수입업체 증명서로 확실한 구매협정이 체결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Confirmation of Sale form" 3부를 구비하며, 수입업체는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발급의 "Produce License"를 취득해야 함.
 - 해당 품목별 수입허가 및 수출국 식물검역 증명서
- 수입요구조건 제외 품목
 - 건조 및 가공 제품
 - 신선 감귤류 및 열대성 과일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기후상 정착할 수 있는 해충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 신선과일류의 수입요구조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도착 후 검역 필요

□ 식물검역

- Plant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
 - 질병 및 해충의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산 신선과일 및 채소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요구
- 수입요구조건
 - 도착 후 감사(audit)적 검역을 실시
 - 해충, 흙,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함
 - 선적서류에 원산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품종별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와 수입국 수입허가서 필요

3) 비타민과 미네랄 강화식품

○ Food and Drug Regulation, Section d.03.002

- 비타민과 미네랄이 강화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영양소에 관해 규정

	Food	Vitamin, Mineral Nutrient or Amino Acid
1.	Breakfast cereals	Thiamine, niacin, vitamin B6, folic acid, Pantothenic acid, magnesium, iron and zinc.
2.	Fruit nectars, vegetable drinks, and mixes for vegetable drinks and a mixture of vegetable juices	Vitamin C.
2.1	Fruit flavoured drinks that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section B.11.150	Vitamin C, folic acid, thiamine, iron, potassium.
2.2	Bases, concentrates and mixes that are used for making fruit flavoured drinks and that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section B.11.151	Vitamin C, folic acid, thiamine, iron, potassium.
3.	Infant cereal products	Thiamine, riboflavin, niacin or niacinamide, calcium, phosphorus, iron, iodine
4.	Margarine and other similar substitutes for butter	Vitamin A, Vitamin D, alpha-tocopherol.
5.	Alimentary pastes	Thiamine, riboflavin, niacin or niacinamide, folic acid, pantothenic acid, vitamin B6, iron, magnesium
6.	Infant formulas and formulated liquid diets	Amino acids-alanine, arginine, aspartic acid, cystine, glutamic acid, glycine, histidine, hydroxyproline, isoleucine, leucine, lysine, methionine, phenylalanine, proline, serine, taurine, threonine, tryptophan, tyrosine, valine; Minerals-calcium, chloride, chromium, copper, iodide, iron, magnesium, manganese, molybdenum, phosphorus, potassium, selenium, sodium, zinc; Vitamins-alpha-tocopherol, biotin, d-pantothenic acid, folic acid, niacin, riboflavin, thiamin, vitamin A, vitamin B6, vitamin B12, Vitamin C, vitamin D, vitamin K.
6.1	Foods represented for use in a very low energy diet	Vitamins-alpha-tocopherol, biotin, d-pantothenic acid, folic acid, niacin, riboflavin, thiamin, vitamin A, vitamin B6, vitamin B12, Vitamin C, vitamin D, vitamin K; Minerals-calcium, chloride, chromium, copper, iodine, iron, magnesium, manganese, molybdenum, phosphorus, potassium, selenium, sodium, zinc
7.	Flavoured beverage mixes and bases recommended for addition to milk	Vitamin A, thiamine, niacin or niacinamide, vitamin C, iron

8.	Simulated meat products, simulated poultry meat products, meat product extenders and poultry product extenders	Thiamine, riboflavin, niacin, pyridoxine, d-pantothenic acid, folic acid, vitamin B12, iron, magnesium, potassium, zinc, copper, histidine, isoleucine, leucine, lysine, methionine, phenylalanine, threonine, tryptophan, valine.
9.	Meal replacements and nutritional supplements	Vitamins-alpha-tocopherol, biotin, d-pantothenic acid, folic acid, niacin, riboflavin, thiamine, vitamin A, vitamin B6, vitamin B12, vitamin C, vitamin D Minerals-calcium, chloride, chromium, copper, iodine, iron, magnesium, manganese, molybdenum, phosphorus, potassium, selenium, sodium, zinc
9.1	Ready breakfast, instant breakfast and other similar breakfast replacement foods however described Condensed milk, milk, milk powder, sterilized milk, (naming the flavour) milk	Vitamin A, thiamine, riboflavin, niacin or niacinamide, vitamin C, iron
10.	Skim milk with added milk solids, partly skimmed milk with added milk solids, (naming the flavour) skim milk, (naming the flavour)	Vitamin D.
11.	skim milk with added milk solids, (naming the flavour) partly skimmed milk with added milk solids, skim milk, partly skimmed milk, skim milk powder Evaporated milk Evaporated skim milk, concentrated skim milk, evaporated partly skimmed milk, concentrated partly skimmed milk	Vitamin A, vitamin D.
12.	Apple juice, reconstituted apple juice, grape juice, reconstituted grape juice, pineapple juice, reconstituted pineapple juice, apple and (naming the fruit) juice as described in section B.11.132, concentrated fruit juice except frozen concentrated orange juice	Vitamin C, vitamin D. Vitamin A, vitamin C, vitamin D.
13.	Flour, white flour, enriched flour or enriched white, flour	Vitamin C.
14.	Revoked by P.C. 1994-1820 of November 1, 1994	Thiamine, riboflavin, niacin, vitamin B6, folic acid, d-pantothenic acid, calcium, iron, magnesium
15.	Table salt, table salt substitutes	Iodine Vitamin C.
16.	Dehydrated potatoes	Vitamin A, thiamine, riboflavin, niacin or niacinamide, vitamin B6, d-pantothenic acid, folic acid, vitamin B12, alpha-tocopherol, calcium, iron, zinc, potassium
17.	Products simulating whole egg	

20.	Revoked by P.C. 1990-2554 of November 29, 1990	
21.	Goat's milk, goat's milk powder	
22.	Partly skimmed goat's milk, skimmed goat's milk, partly skimmed goat's milk powder, skimmed goat's milk powder	Vitamin D. Vitamin A and D.
23.	Evaporated goat's milk	
24.	Evaporated partly skimmed goat's milk, evaporated skimmed goat's milk	Vitamins C, D, folic acid. Vitamins A, C, D, folic acid.
25.	Pre-cooked rice as defined is subsection B.13.010.1(1)	
26.	Mineral water, spring water, water in sealed containers, prepackaged ice	Thiamine, niacin, vitamin B6, folic acid, pantothenic acid, iron
27.	Liquid whole egg, dried whole egg, frozen whole egg, liquid yolk, dried yolk, frozen yolk, liquid egg white, (liquid albumen), dried egg white(dried albumen), frozen egg white (frozen albumen), liquid whole egg mix, dried whole egg mix, frozen whole egg mix, liquid yolk mix, dried yolk mix, frozen yolk mix	Fluorine Vitamin A, vitamin D, vitamin E, thiamine, riboflavin, niacin, vitamin B6, folacin, vitamin B12, pantothenic acid, calcium, phosphorus, magnesium, potassium, iron, zinc

4. 수입통제품목

- 우유 함유 제품: 낙농 제품은 수입시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작업 미비로 통관 지연 또는 파기
- 아이스크림: 분말우유 함유 제품은 통관이 가능하나 액상 우유 함유 제품의 경우 검역조건 까다로워 거의 수입되지 않음
- 캔커피: 우유 함유로 통관 거부
- 메로나 등 아이스바, 국수류, 부침가루 등의 제품은 TRQ의 적용을 받는 수입통제 품목으로 업체당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로 쿼터한도를 초과 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쿼터초과 수입 시에도 아직은 수입 절대량이 적어 규제를 크게 받고 있지는 않은 상태임.

5. 한국식품의 주요 수입규정

1) 육류 및 육류 가공품

- 한국산 육류 및 육류 2% 이상 함유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소고기 다시다, 액상카레, 만두류 등이 대표적인 육류 가공품목으로 품명 표기시 "Instant Soup Stock"이나 "Dumpling" 등으로 표기하여 수입하고 있음.

2) 신선 농산물

- ☐ 한국산 배(황금배, 신고배 등)
- '98년 시범수입 기간을 거쳐 현재 지정된 수출단지에서만 수입되고 있는 한국산 배는 '98년 1월부터 심식 나방류와 응애가 검출되어 8월초까지 일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음
- 규제 해충
 - Blackspot, Peach fruit moth, Yellow peach moth, Oriental fruit moth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만 규제), Brown rot, Pear fruitworm, red spider mite, Hawthorn spider mite, Tetranjchus truncatus
- 선적 전 요구조건
 -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소에 의해 캐나다 수출을 인정받은 지정된 지역의 배만 캐나다 수출이 가능하며 해충의 발생금지를 위하여 농약 사용, 모니터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함(수확직전까지 봉지재배)
- 식물검역증명서
 - 선적전 14일 이내에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원본을 캐나다에 제출해야 함

<한국산 주요 신선농산물 수입조건>

품 목	캐나다 수입허가	수출국 식물위생증명서	비 고
아시안 배 (신고/황금배 등)	불필요	필요	도착 후 검역
사 과	불필요	불필요	96.3.31 - 98.3.31 시범수입
감 귤	불필요	불필요	해충 및 흙이 없이 깨끗해야 함 도착 후 검역
밤	필요	필요	
살구, 넥타린, 복숭아, 포도, 자두, 딸기 등	CFIA 산하 Plant Protection Division의 병해충 위험 평가 관련 사전승인(PRA) 필요		
신선채소류	불필요	불필요	해충 및 흙이 없이 깨끗해야 함 도착 후 검역
감자 제외, 버섯류, 신선 뿌리인삼 포함	필요	불필요	해충 및 흙이 없이 깨끗하고 새 용기에 포장
건조인삼	불필요	불필요	
옥수수 통째	금지	금지	해충위험 평가결과에 근거한 사전승인 필요
옥수수 씨 (팝콘/가공/사료)	불필요	불필요	
절 화	불필요	불필요	해충 및 흙이 없이 깨끗해야 함 국화: 'White Rust' 원인검역
그린하우스 식물 (선인장, 양란 등)	필요	필요	

3) 수산물 수입경고 리스트

- 2008년 6월 현재 빈번한 통관지연(Detention) 사례로 수입경고 (Import Alert) 리스트에 오른 한국산 수산물은 캔제품이 5개, 냉동/반저장/기타 제품이 10개, 즉석요리제품 4개, 어패류 1개로 총 20개로 과거 99년 조사시 53개에 비해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수산물 통관이 특히 까다로운 관계로 수입업체의 경험상 2-3번 연속 적발시 Import Alert 리스트에 등재되어 해당제품을 수입할 때 마다 검역을 실시함

5. 자료출처 및 사이트

○ 근거법: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없으나, 수입통제리스트(Import Control List)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수입제한
- 자동수입조건조회시스템 (Automated Import Requirement System - AIRS)을 사용하여 품목별 수입 절차 및 구비 서류와 관련 규제 사항 등 자세한 정보 입수 가능
- 웹사이트 주소: <http://www.inspection.gc.ca/english/imp/airse.shtml>

○ 근거법: Regulations Respecting Food and Drugs (C.R.C., c. 870)

-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 웹사이트 주소 :

http://laws.justice.gc.ca/en/ShowDoc/cr/C.R.C.-c.870/bo-ga:l_A::bo-ga:l_B/20090730/en?page=1&isprinting=true

6. 검역원 현황 및 담당자 내역

- 수입국가 별 검역원은 없으며, 품목별 담당자가 각 부서에 있음.
- 수입산 농수산물의 경우, 연방정부 내 Policy and Programs 부서의 Imported & Manufactured Foods의 Director에 의해 관할.
- 주류는 각주별로 수입이 관할되며, BC주는 BC Liquor Distribution Branch (LDB) 수입여부를 결정함.

Policy and Programs Branch Senior Management Structure



National Headquarters

1400 Merivale Road Ottawa, Ontario K1A 0Y9

Tel: 1-800-442-2342 / 613-225-2342 TTY: 1-800-465-7735 Fax: 613-228-6601

BC Coastal 4321 Still Creek Dr., Suite 400 Burnaby, British Columbia V5C

6S7 Tel: 604-666-6513 Fax: 604-666-1261

Local Offices - Operations

Import Service Centre - BC Coastal Region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 Import Service Centre - BC Coastal
Region 4321 Still Creek Drive Burnaby, British Columbia 6S7

Canada Telephone Fax

- Bok, Joanne; Point of Entry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Chalmers, Marla;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Craig, Heather E; Point of Entry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Dombovary, Peter; Import Specialist Supervisor; 604-666-9240
- El-Zawahery, Souzan; Program Assistant; 604-666-9240
- Eng, Carol; Point of Entry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Grewal, Simrat; Point of Entry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Grupe, Carrol; Import/Export Assistant/Program Information Assistant; 604-666-9240
- Gustafsson, Alex; A / Import Inspection Supervisor; 604-666-9240
- Harrop, Teri;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Klyne, Cheryl;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Lagace, Olivier; Import/Export Assistant/Program Information Assistant; 604-666-9240
- Lam, Andria;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Lang, Tammy; Point of Entry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Lau, Maximo; Inspector; 604-666-9240
- Neid, Lesley;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Odense, Eric; Program Officer; 604-666-1858
- Purewal, Deepraj; Point of Entry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Rempel, Janet; Import Specialist; 604-666-9240
- Siu, Gladys; Import Specialist; 604-666-9240